

의안번호	2205173
의 퇴 인	전재수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E47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 223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072억원 (연평균 △2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머목)	-223	-219	-214	-210	-206	-1,072	-21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개정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비용은 월 30만원 이내의 금액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은 추계, 출산지원금 전액비과세는 자료의 한계로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며, 부칙에 의해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2025.1.1.부터 시행하며, 동 개정규정은 동 법 시행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보육수당액은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 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 과표구간별 1인당 출산·보육수당 평균액 자료를 사용하고,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과거 비과세 한도 금액 하락 추세(2019-2022 기간 -2.0%)를 따른다고 전제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상향(전액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소득자수 및 1인당 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하지 못함
-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세청의 현행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액('22년 귀속소득 기준)에 대한 과표구간별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보육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 상향액 만큼 증가(월 20만원 → 월 30만원)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계

□ (세수효과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약 237억원의 근로소득세수 감소가 예상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귀속연도) 기준

과세표준 규모	공제 인원 ¹⁾ (A) 명	1인당 평균 비과세액 (만원)			실효세율 ³⁾ (F) %	1인당 세수효과 (G=E×F) 만원	총 세수효과 (H=A×G) 억원
		현행 ²⁾ (B)	개정안 (C)	공제금액 차이 (E=C-B)			
전체	453,843.0	139.3	209.0	69.7	11.9		237.0
1천만원이하	45,248.0	108.2	162.2	54.1	0.5	0.3	1.2
1.2천만 이하	13,150.0	135.9	203.8	67.9	1.0	0.7	0.9
3천만 이하	181,661.0	134.0	201.1	67.0	4.0	2.7	48.3
4천만 이하	88,238.0	137.7	206.6	68.9	8.0	5.5	48.9
4.6천만 이하	30,754.0	146.5	219.7	73.2	9.3	6.8	20.9
6천만 이하	40,654.0	153.1	229.7	76.6	11.3	8.7	35.3
7천만 이하	16,357.0	163.2	244.8	81.6	13.6	11.1	18.1
8천만 이하	10,572.0	168.0	252.0	84.0	14.8	12.5	13.2
8.8천만 이하	6,042.0	171.5	257.3	85.8	15.8	13.5	8.2
1억 이하	5,971.0	172.2	258.3	86.1	17.2	14.8	8.9
1.5억 이하	9,465.0	182.4	273.5	91.2	20.9	19.1	18.0
2억 이하	2,863.0	180.6	271.0	90.3	25.3	22.8	6.5
3억 이하	1,711.0	185.9	278.8	92.9	28.7	26.7	4.6
5억 이하	754.0	202.1	303.2	101.1	32.1	32.5	2.4
10억 이하	296.0	210.1	315.2	105.1	35.6	37.4	1.1
10억 초과	107.0	209.3	314.0	104.7	41.2	43.1	0.5

주: 1) 국세통계연보 출산보육수당 신청인원, 2021년 귀속기준

2) 2021년 귀속기준 국세통계연보 출산보육수당 신청인원의 1인당 비과세액(2021년 기준 한도 월 10만원)이 2023년부터 적용된 공제한도 확대(월 10만원→월 20만원)를 반영하여, 공제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 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3)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대비 결정세액 비율

자료: 「재정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 및 「2022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귀속연도) 기준

총급여액 규모	공제 인원 ¹⁾ (A) 명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 (만원)				1인당 결정세액 ⁴⁾ (F) 만원	1인당 세수효과 (G= min(E,F) 만원	총 세수효과 (H=A×G) 억원
		현행 ²⁾ (B)	개정안 (C=B×(1 +D))	변화율 ³⁾ (D)	공제금액 차이 (E=C-B)			
전체	9,813,785	11.4	15.9	40.3%	4.6	—	—	4,687.3
1천만 이하	0			35.7%				
1.5천만 이하	2,276	11.8	16.4	39.5%	4.7	1.1	1.1	0.3
2천만 이하	83,115	11.6	16.1	38.7%	4.5	6.5	4.5	37.3
3천만 이하	1,278,041	11.4	15.8	38.7%	4.4	19.9	4.4	562.5
4천만 이하	1,663,124	10.9	15.3	41.2%	4.5	60.1	4.5	743.4
5천만 이하	1,566,676	11.1	15.8	42.6%	4.7	129.9	4.7	741.1
6천만 이하	1,271,619	11.4	16.2	42.1%	4.8	220.0	4.8	611.1
8천만 이하	1,694,882	11.6	16.6	43.0%	5.0	382.3	5.0	842.8
1억 이하	1,009,923	11.7	16.6	42.0%	4.9	723.2	4.9	495.3
2억 이하	1,093,276	11.7	16.9	44.2%	5.2	1,744.3	5.2	566.9
3억 이하	98,014	11.6	17.4	49.2%	5.7	5,315.0	5.7	56.2
5억 이하	36,355	11.6	17.4	50.0%	5.8	10,225.1	5.8	21.1
10억 이하	12,712	11.6	17.3	50.0%	5.8	21,329.7	5.8	7.3
10억 초과	3,772	11.5	17.2	100.0%	5.7	80,490.3	5.7	2.2

주: 1) 국세통계연보 보험료세액공제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 있는 자의 인원수

2) 국세통계연보 보험료세액공제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 있는 자의 1인당 평균 세액공제 금액

3) 변화율은 앞의 [표 4]의 변화율을 준용하되, 재정패널조사에 총급여 10억원 초과자가 없음에 따라 이는 바로 앞의 구간인 5억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변화율을 적용

4) 2022년 귀속 국세통계연보 기준 1인당 결정세액(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재정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 및 「2022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세수효과 요약

- 개정안에 따라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 223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072억원 (연평균 △2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머목)	-223	-219	-214	-210	-206	-1,072	-21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